

경운대학교 외국대학과의복수학위제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와 외국대학간의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리) 본 규정에서 “복수학위제”라 함은 우리대학교와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수학기간 및 신분)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우리대학교에서 2년, 외국대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우리대학교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.

제4조(지원자격) ① 복수학위 과정의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지원 당시 우리대학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자
2. 출국 직전 학기 포함 4학기 이상 이수,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
3. 평점평균이 3.5 이상인 자
4.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소유한자
5.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② 복수학위 운영 형태에 따라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이 다른 경우, 상기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선발시기 및 필요서류) ①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

② 복수학위 과정 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내셔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복수학위이수신청서 1부
2. 학부(과)장 또는 학장 추천서 1부
3. 수학계획서 1부
4. 영문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5.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능력 증빙서류
6. 기타 제출을 요하는 서류

제6조(학점인정)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우리대학교 및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우리대학교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에 관한 인정은 우리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
③ 우리대학교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 이내로 한다.

④ 외국대학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우리대학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수학기간)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양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.

② 복수학위 이수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우리대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할 수 없다.

③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우리대학교 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1회(1학기)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에서의 휴학 기간은 우리대학교 휴학 기간에 포함한다.

④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.

제8조(등록 및 학위수여) ① 우리대학교 학생은 우리대학교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.

②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우리대학교와 외국대학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.

제9조(등록금납부) ① 복수학위과정 이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외국대학 재학시점부터 4학기까지는 우리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4학기를 초과한 학기부터는 수학 중인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다.

② 등록금 및 기타 복수학위제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대학과의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.

제10조(규정준수) ① 복수학위과정 이수학생은 우리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